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임실군의의회의장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다.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선정 절차 및 자격 조건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라.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5 ~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0 .20. (4일간)
- 라. 불 입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
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영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 후 5년 동안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대 표 자 :
- 상 호 명(예정) :
- 판매 희망 음식 :
- 비용 자금 운용계획(자부담 포함)

- 영업 운영계획(1년 기준)

- 위생, 환경, 안전대책

- 차량 관리계획

- 그 밖의 사항

20 . . .

신청인 : (인)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